

## 주주제위

#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(공고)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3조 및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: 2026년 6월 15일(월) 오전 10시 30분
2. 장 소: 당사 회의실(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연구개발타워 9층 (상암동, 누리꿈스퀘어))
3. 회의의 목적사항
  - 가) 부의안건
    - (ㄱ) 제1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 및 추가의 건(특별결의)
    - (ㄴ) 제2호 의안: 대표이사 중임의 건
    - (ㄷ) 제3호 의안: 주식 액면분할의 건(1주당 5,000원 -> 500원)
    - (ㄹ) 제4호 의안: 자기주식처분 계획 및 보유 계획안 수정의 건  
(우리사주조합 관련 처분안만 내용 수정)
    - (ㄴ) 제5호 의안: 감사위원회 설치
      1.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감사 사임
      2. 사외이사 선임
      3.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
4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  - 가) 직접행사: 신분증
  - 나) 대리행사: 수임인의 신분증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, 인감날인)

2026 년 5 월 29 일

주식회사 자이오넥스  
대표이사 류 동식(직인생략)

## 별첨 1: 주식회사 자이오넥스 정관 수정안

| 현행   | 수정안   |
|--|---|
| <b>제2장 주식</b>  | <b>제2장 주식</b>   |
| <b>제6조 (1주의 금액)</b><br>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의 금액은 금 5,000원으로 한다.   | <b>제6조 (1주의 금액)</b><br>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.  |
| <b>제5장 이사 · 이사회 · 대표이사</b>   |   |
| <b>제26조(이사의 수)</b><br>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 | <b>제26조(이사의 수)</b><br>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, 관련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|
| <b>제30조(이사의 의무)</b><br>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br>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br>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br>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| <b>제30조(이사의 의무)</b><br>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<br>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br>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br>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<b>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</b>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<br>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,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 |
| <b>제31조(이사의 보수)</b><br>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 | <b>제31조(이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<br>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.<br>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.  |
| <b>제32조(퇴직금)</b><br>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 | <b>삭제</b>   |
| <b>제2절 이사회</b>   |   |
| <b>제33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</b><br>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<br>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<br>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 | <b>제32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</b><br>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<br>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통지하여 소집한다.<br>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br>④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 |

| 현행   | 수정안   |
|--|---|
| <p>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</p> <p>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  | <p>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</p> <p>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  |
| <p><b>제34조(이사회 결의)</b></p> <p>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</p> <p>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여,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</p> | <p><b>제33조(이사회 결의)</b></p> <p><b>좌동</b></p>   |
| <p><b>제35조(이사회 의사록)</b></p> <p>① 이사회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  | <p><b>제34조(이사회 의사록)</b></p> <p>① 이사회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</p>  |
|  | <p><b>제35조(위원회)</b></p> <p>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감사위원회</p> <p>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</p> <p>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2조 내지 정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|
| <p><b>제 35 조의 2(상담역 및 고문)</b></p> <p>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.</p>  | <p><b>제 36 조(상담역 및 고문)</b></p> <p><b>좌동</b></p>  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절 대 표 이 사</b></p>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3 절 대 표 이 사</b></p>   |
| <p><b>제 36 조(대표이사의 선임)</b></p> <p>① 회사는 대표이사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</p>   | <p><b>제 37 조(대표이사의 선임)</b></p> <p><b>좌동</b></p>   |
| <p><b>제 37 조(대표이사의 직무)</b></p> <p>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</p>  | <p><b>제 38 조(대표이사의 직무)</b></p> <p><b>좌동</b></p>  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6 장 감 사</b></p> 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6 장 감 사 위 원 회</b></p>   |

| 현행  | 수정안   |
|---|---|
| <p><b>제38조(감사의 수)</b><br/>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.</p>  | <p><b>제39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</b></p> <p>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</p> <p>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3항·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.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|
| <p><b>제39조(감사의 선임)</b></p> <p>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·해임하며,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</p> <p>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③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2항·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| <p><b>제39조의 2(감사위원의 선임·해임)</b></p> <p>① 제39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p>   |
| <p><b>제40조(감사의 임기와 보선)</b></p> <p>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</p> <p>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이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</p>   | <p><b>제40조(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)</b></p> <p>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.</p>   |

| 현행  | 수정안  |
|---|--|
| <p>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⑤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⑥감사에 대하여는 제30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⑦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</p> <p>⑧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.</p> |  |
| <p><b>제41조(감사록)</b></p> <p>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.</p>  | <p><b>제41조(감사위원회의 직무 등)</b></p> <p>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</p> <p>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</p> <p>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p>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|
| <p><b>제42조(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</b></p> <p>① 감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퇴직한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임원퇴직금지</p>  | <p><b>제42조(감사록)</b></p> <p>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</p>   |

| 현행   | 수정안  |
|--|--|
| 급 규정에 의한다.   | 다.   |
| <b>제 7 장 회 계</b>   | <b>제 7 장 회 계</b>   |
| <p><b>제44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b></p> <p>①대표이사는 상법 제47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 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<b>제44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</b></p> <p>①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 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⑤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상법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⑥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 |
| <p><b>제44조의2 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</p> <p>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 | <p><b>제44조의2 (외부감사인의 선임)</b></p> <p>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 |

## 별첨 2: 자기주식처분 및 보유계획안

### 1.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보유목적

- 정관 제11조의3 (주식의 처분) 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유상증여 및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경영상 목적(시관련 기업인수에 따른 Post-Closing 운영자금 마련목적)으로 제3자배정을 통한 자기주식 처분
- 우리사주조합에게 처분하기위한 자기주식보유

### 2. 처분 또는 보유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, 취득방법

- 2026년 5월 29일 현재 (주)자이오넥스 자기주식 전체: 보통주 11,323주 (취득방법: 배당가능이익범위 내 직접취득)

### 3. 자기주식 처분 계획

| 보유/처분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방법          | 주식의 종류 | 보유 개시 시점 기준  |               | 처분 예정 시점 기준 |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시점           | 주식수(주)        | 시점          | 주식수(주)       |
| <b>가.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, 취득방법</b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신기술도입을 위한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당가능이익범위 내 취득 | 보통주    | 26.3.27 주 1) | 6,000         | 26년 중 주 2)  | -            |
| 우리사주조합에게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당가능이익범위 내 취득 |        | 26.3.27 주 1) | 11,323        |             | -            |
| <b>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처분 및 보유 계획</b>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 <b>17,323</b>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|
| <b>나.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의 종류 및 수량</b> |               | 보통주    | 26.3.27 주 1) | 369,777       | 26년 중 주 2)  | 369,777 주 3) |
| <b>다.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</b>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-      | 26.3.27 주 1) | 4.48%         |             | 0%           |

주1) 시행일 이전 기보유분으로 보유/처분계획 승인받은 주주총회일을 보유 개시 시점으로 함

주2)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과정이나 업무추진경과에 따라 실제처분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

주3) 2026년 5월 29일 현재 발행주식총수(387,100주)에서 전체 자기주식(11,323주) 제외기준, 추후 자본금 또는 자기주식 변동에 따라 변동 가능

### 4. 예정된 보유 기간 및 처분시기

주1) 처분 상대방과의 협의과정이나 업무추진경과에 따라 실제 보유/처분 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

| 보유/처분 목적     | 주식수    | 보유 기간        | 처분 예정 시기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신기술도입을 위한 처분 | 6,000  | 2026년 중 주 1) | 2026년 중 주 1) |
| 우리사주조합에게 처분  | 11,323 | 2026년 중 주 1) | 2026년 중 주 1) |